■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Tin dichlor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772-99-8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가열 시 폭발적으로 분해됨. - 뜨거운 물에 의해 분해됨. - 분해 시 염화수소 등의 독성 흄을 생성함.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용기를 강하게 밀봉하고 건조하게 보관할 것. -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 줄 것). - 저장, 취급 시 음료 또는 음식을 먹지 말고 금연할 것. - 오염된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 - 양압자급식호흡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반드시 착용하고 보호복과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취급 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가열시 분해되어 주석산화물, 이산화황의 흄을 생성하므로 주의할 것 - 산과 접촉하여 플루오르화수소를 생성하므로 주의할 것 - 금속을 부식시키며 몇 종류의 플라스틱과 고무, 코팅을 부식시키므로 주의할 것 - 물이나 습기와 만나 격렬히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형성하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 할 것.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 산화제와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시킬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